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0 - 13 - 08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의 결 일 2020.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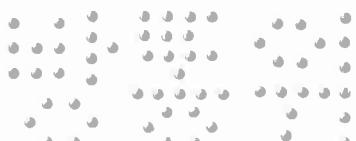
주 문

1.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나.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할 것

3.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2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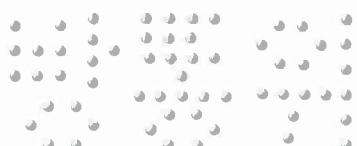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I.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 채팅 서비스 '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전체 매출				
관련 매출				
관련없는 매출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검·경 등에서 통보한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9.1.9.~10.)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음성채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019. 1. 9. 현재 아래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정보	이름,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성별		건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개인정보 유출 경과 및 대응

- 2019.1.4.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 관련하여 유선으로 안내 받아 최초 인지
- 2019.1.9.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조사 시 개인정보 유출 파일과 의 회원정보 DB파일 내용을 대조 한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
- 2019.1.9.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2) 개인정보 유출 규모

미상의 해커는 음성채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402,179건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피싱인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

구분	유출항목	유출건수
이용자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생년월일, 성별	2,402,179건*
합 계		2,402,179건

* 의 기간 동안 가입한 이용자 개인정보

3) 유출 경로



- 웹로그 부재로 개인정보 유출경로 확인 불가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 중인 개인정보 DB Table()에 부터 까지 제3자 제공제공(금융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2,432,109건을 저장·보유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외부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은 개인정보 DB Table ()에 2,610,522건의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구간(로그인)에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해야 하나, 평문으로 이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2,605,767건을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마.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4. 2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5. 7.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고시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제1조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본문의 영업상 목적이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



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제1호),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제2호)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춘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인증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6조제1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및 이용자 등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평문형태가 아닌 해쉬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 값으로 시스템에 저장(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고시 제6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구간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하며,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이용한 보안서버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한 행위

피침인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없고 법령, 고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2,432,109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침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피침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ex.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비밀번호 암호화) 피신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하면서 이를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112비트 이상 보안강도)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전송구간 암호화) 피심인이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할 때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고시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피침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2,605,767건을 폐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3의2①		법적 근거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접근통제	§28①2호	§15②2호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패스워드만을 이용토록 하여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④)



	암호화	§28①4호	§15④1호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해쉬함수 등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고시§6①)
	암호화	§28①4호	§15④3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지 아니한 행위(고시§6③)
	유효기간	§29②	§16②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2)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3)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 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 할 것

다.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제1항,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다.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6조 제1항제2호	1,000	2,000	3,000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더. 법 제29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6조 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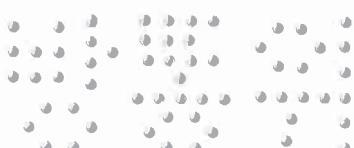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나.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 제2호 너목		
위반의 정도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3의2①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28①2·4호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29②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2,3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64조의3제1항제6호(과징금) 및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침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침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침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침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3월 11일

위 원 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석 진



위 원 허 옥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김 창 룡

